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5. 6. 27.

사회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2025년 5월 30일

나. 발 의 자: 최인순 의원 외 4명

다. 회부일자: 2025년 6월 9일

라. 상정일자: 제261회 영등포구의회 2025년도 제1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2025. 6. 13.)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최인순 의원)

가. 제안이유

-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주차시설 설치 등의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문화 수준 향상을 목표로 함.

나. 주요내용

-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정의(안 제2조)
-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 사업추진 및 홍보(안 제4조 ~ 5조)
- 안전교육 및 실태조사(안 제6조 ~ 8조)

- 이용자·사업자 준수사항(안 제9조 ~ 10조)
- 무단방치 및 위반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12조)
- 협력체계 및 시행규칙(안 제13조 ~ 14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류데레사)

□ 개정 배경 및 취지

- 도로교통공단 통계에 따르면, 국내 최초로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가 도입된 2018년 9월 이후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사고가 급증하였으며, 연간 약 2,000건 이상으로 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음.
- 2023년 기준 사고 유형별로는 ‘차대 사람 사고’가 전체의 46%를 차지하여, 전체 차종 평균인 18.7% 대비 약 2.5배 높은 수치를 보임.
- 이는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가 통행방법을 위반하고 보도로 통행하는 경우가 많아 다른 차종에 비해 사람과의 사고 비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함.
- 이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문화 조성 및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고자 발의된 안전임.

□ 주요 내용으로

- 안 제2조(정의)제1호는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서술한 정의를 법 조항의 인용을 통해 입법경제성을 제고하였으며,
- 제2호(이용자) 및 제3호(대여 사업자)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여 조문 해석의 명확성을 제고함.
- 안 제4조(사업추진)제1항은 ▲안전시설 설치사업 ▲민관협력사업 ▲홍보·교육 ▲통행금지 도로 운영 등 세부 사업을 명시함으로써 사업추진의 방향성을 제시함.
- 안 제6조(안전교육 등)제1항은 기존 안전교육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규정한 조문을 구체화하여 안전교육 내용과 방향성을 제시함.
- 안 제7조(안전이용기준의 마련)는 구청장이 ‘안전이용기준’을 마련 및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해당 기준을 마련하는 경우 이용자 및

대여사업자의 의견 청취 절차도 규정함으로써 실질적인 현실 여건을 반영하여 실행가능성을 제고함.

- 안 제8조(실태조사)제1항은 사업추진 및 안전이용기준을 마련할 때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 제2항은 사업 추진 시 관련 대상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함.
- 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는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자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자, 대여사업자 및 일반 구민 등에게 준수해야 할 규범적 사항을 제시한 것으로 판단됨.
- 안 제12조(주·정차 위반에 관한 사항)는 법 제14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항제2호에 따라 구청장에게 위임된 조치 사항을 명시함.

□ 검토결과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 전동킥보드 도입 이후 급증한 사고를 사전에 적극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추진 및 안전교육의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하였으며,
 - 안전이용기준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고, 이용자, 사업자 등에 대한 준수사항을 제시하는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합적인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함으로써 구민의 보행안전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4. 심사결과: 원안 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인순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550
----------	-----

발의연월일: 2025. 5. .

발 의 자: 최인순, 이순우, 이규선

남완현, 정선희 의원 (5인)

1. 제안이유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주차시설 설치 등의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문화 수준 향상을 목표로 함.

2. 주요내용

가.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정의(안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사업추진 및 홍보(안 제4조 ~ 5조)

라. 안전교육 및 실태조사(안 제6조 ~ 8조)

마. 이용자, 사업자 준수사항(안 제9조 ~ 10조)

바. 무단방치 및 위반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12조)

사. 협력체계 및 시행규칙(안 제13조 ~ 14조)

3. 개정안: “별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9의2호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를 말한다.
2. “이용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대여 사업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자에게 유상 또는 무상으로 빌려주는 자를 말한다.

제4조제1항 중 “이용 환경 조성 및 이용 활성화”를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주차시설 및 거치대 등의 안전시설 설치사업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협력사업
3.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4. 보행자 안전을 위한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금지 도로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제1항 중 “경우”를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한 시책 등에 관한 사항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한 교통법규 및 기초질서에 관한 사항
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의 위험성에 관한 사항
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 음주 및 무면허 운전 방지에 관한 사항
5. 보행자 안전을 위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올바른 운행 방법에 관한 사항
6.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정차위반 근절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청소년 등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의식 개선 및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 및 제8조를 각각 제13조 및 제14조로 하고, 제7조부터 제12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안전이용기준의 마련) ①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관리 방안 등을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이용기준(이하 “안전이용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이용기준을 마련하는 경우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자와 대여사업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8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4조 및 제7조에 따른 사항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및 안전사고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는 매년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으며, 제4조의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관련 기관, 관계자 및 개인형 이동장치를 자주 이용하는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제9조(이용자 준수사항)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라야 한다.

1.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자의 의무 준수사항 이행
2. 교통과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차질서 이행
3. 보행자 사고방지를 위한 안전운행 이행

제10조(대여 사업자 준수사항) 대여 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이용자들의 안전모 등 안전장비 보관장치 설치·운영
2. 어린이보호구역 등 구청장이 지정하는 장소의 제한 운행속도 준수
3.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거치대의 개별·공동 설치 및 운영
4. 이용자의 이용자격을 확인 후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
5. 불법 주차 및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 조치
6.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 운행 가이드라인 및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
7. 이용 중에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및 보장

범위 안내

8.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무단방치 금지) 누구든지 도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시설, 그 밖의 공공장소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으로 방치하거나 보행자나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제12조(주·정차 위반에 관한 사항) 구청장은 법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를 위반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하여 법 제35조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소형·저속의 개인형 이동장치를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9의2호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를 말한다.		
		2. “이용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대여 사업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자에게 유상 또는 무상으로 빌려주는 자를 말한다.		
제4조(사업추진) ①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 및 이용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4조(사업추진) ① -----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		
<신 설>		1.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주차시설 및 거치대 등의 안전시설 설치사업		
<신 설>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협력사업		
<신 설>		3.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신 설>	<u>이용을 위한 홍보 및 교육</u> 4. <u>보행자 안전을 위한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금지 도로 운영에 관한 사항</u>
<신 설> ② (생략) 제6조(안전교육 등) ①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문화 수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u>경우</u> 안전교육을 할 수 있다.	5. <u>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u>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안전교육 등) ① ----- ----- ----- ----- <u>경우</u> 다음 <u>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u> ----- -----.
<신 설>	1. <u>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한 시책 등에 관한 사항</u>
<신 설>	2. <u>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한 교통법규 및 기초질서에 관한 사항</u>
<신 설>	3. <u>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의 위험성에 관한 사항</u>
<신 설>	4. <u>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 음주 및 무면허 운전 방지에 관한 사항</u> 5. <u>보행자 안전을 위한 개인형</u>

<신 설>

<신 설>

② (생 략)

<신 설>

<신 설>

이동장치의 올바른 운행 방법
에 관한 사항

6.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정차
위반 근절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청소년 등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의식 개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안전이용기준의 마련) ①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
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관리 방
안 등을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
치 안전이용기준(이하 “안전이
용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
이용기준을 마련하는 경우 개인
형 이동장치의 이용자와 대여사
업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8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4
조 및 제7조에 따른 사항의 추
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
형 이동장치의 이용 및 안전사
고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신 설>

<신 설>

시행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는 매년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으며, 제4조의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관련 기관, 관계자 및 개인형 이동장치를 자주 이용하는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제9조(이용자 준수사항)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라야 한다.

1.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자 의무 준수사항 이행
2. 교통과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차질서 이행
3. 보행자 사고방지를 위한 안전운행 이행

제10조(대여 사업자 준수사항) 대여 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이용자들의 안전모 등 안전장비 보관장치 설치·운영
2. 어린이보호구역 등 구청장이 지정하는 장소의 제한 운행속

<신 설>

<신 설>

도 준수

3.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 거
치대의 개별 · 공동 설치 및
운영

4. 이용자의 이용자격을 확인
후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

5. 불법 주차 및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
조치

6.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 운
행 가이드라인 및 이용자 준
수사항 안내

7. 이용 중에 발생한 인적 · 물
적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 가
입 및 보장범위 안내

8.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무단방치 금지) 누구든지
도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시
설, 그 밖의 공공장소 등에 개인
형 이동장치를 무단으로 방치하
거나 보행자나 다른 차량의 통
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제12조(주 · 정차 위반에 관한 사
항) 구청장은 법 제32조부터 제

<u>제7조</u> · <u>제8조</u> (생략)	<u>34조까지를 위반한 개인형 이동 장치에 대하여 법 제35조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u> <u>제13조</u> · <u>제14조</u> (현행 제7조 및 제8조와 같음)
-------------------------------------	--